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94

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이용우·신장식·전진숙

박홍배 • 이학영 • 장철민

임오경 · 한창민 · 정혜경

전종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 「근로기준법」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근로감 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, 「사법경찰관리 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은 노동관계법 중 일부만을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.

이에 채용과정에서 거짓 채용공고를 하는 경우, 불법으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경우, 근로계약에 관한 소개를 이른바 '가짜 3.3'으로 불리는 탈법적 노무제공계약으로 둔갑하여 소개하는 경 우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직업안정법」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관계에 대한 전 문성을 갖춘 근로감독관이 아닌 통상의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특히 채용 전 범죄는 경찰이, 채용 이후의 범죄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연속 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국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.

마찬가지로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경우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7조제3항제3호)는 이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반면, 그와 유사하게 고용보험 가입확인 청구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경우(「고용보험법」 제116조제2항제1호)에는 이 법에 「고용보험법」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.

이에 근로감독관의 존재목적과 업무성격 및 이 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 등을 고려하여,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중 다른 법률에서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범죄 등에대한 수사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신속한 노동관계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확인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하는 등의 「고용보험법」 위반 범죄에 관하여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을 위반하여 불이익처우를 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(안 제6조의2제1항제20호 신설).
- 나.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미성년자에게 연

장근로를 시키는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위반 범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(안 제6조의2제1항 제21호 신설).

- 다. 고용노동부 소관사무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직접 관련된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 범죄(외국인근로 자 선발 불법개입, 사업장변경 방해,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가입 등)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(안 제6조의2제1항제22호 신설).
- 라.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는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위반 범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(안 제6조의2제1항제23호 신설).
- 마. 고용노동부 소관사무인 직업소개·근로자공급사업·구인광고 및
 그 사업의 신고 등에 직접 관련된 「직업안정법」 위반 범죄에
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(안 제6조의2제1항제24호 신설).
- 바. 고용노동부 소관사무인 채용광고에 직접 관련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 범죄(거짓 채용광고 등)에 관하여 근 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(안 제6조의2제1항제2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에 제20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0. 「고용보험법」(제116조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)
- 21.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(제40조제1항만 해당한다)
- 22.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
- 23.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
- 24. 「직업안정법」
- 25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제6조의2(근로감독관 등) ① 「근 | 제6조의2(근로감독관 등) ① | | |
| 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감독관 | | | |
| 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 | | | |
| 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| | | |
|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 | | | |
| 무를 수행한다. | | | |
| 1. ~ 19. (생 략) | 1. ~ 19. (현행과 같음) | | |
| <u><신 설></u> | 20. 「고용보험법」(제116조제2 | | |
| <u><신 설></u> | <u>항제1호만 해당한다)</u> 21.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(제40조제1 | | |
| <u><신 설></u> | <u>항만 해당한다)</u> 22.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<u>에 관한 법률」</u> | | |
| <u><신 설></u> | 23.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| | |
| <u><신 설></u> | <u>24. 「직업안정법」</u> | | |
| <u><신 설></u> | 25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 | | |
| | 한 법률 | | |
| ②・③ (생 략) 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| | |